〈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40857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6-20	ביבידו טומוטו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9	담당자 이메일

케이잡스 정 보 공 개 서

[케이잡스(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케이잡스(주)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잡스 가맹사업본부 소재지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1층 2호						1층 2호	
대표전화 02-6959-8983 가맹사업부 02-6959-7658 팩스번호 -						_	

목 차

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1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4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7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1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0
VIII.	교육・훈련の	에 대한 설명32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34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케이잡스(주)	케이잡스	서울특별시 분	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1층 2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3	도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12.11	2014.12.09	김우진, 박선용	02-6	5959-8983	_	
	법인등록번호	110111-5585992	사업자등록번	<u></u>	113-8	86-93304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1층 2호		
대표이사	김우진	케이잡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312 1 1		/ II 1 H —	김우진, 박선용	02-6959-8983	-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1층 2호		
대표이사	박선용	케이잡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우진, 박선용	02-6959-8983	_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1층 2호		
사내이사	김정은	케이잡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우진, 박선용	02-6959-8983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해당없음				



인도함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케이잡스	IR서비스
상 호	케이잡스 0 0 센터	
상표(서비스표)	Keep your jobst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중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3,564,334	2,531,187	1,033,147	5,587,557	51,870	7,999
2023년	4,067,417	3,041,854	1,025,562	5,066,943	138,792	11,414
2024년	4,047,428	2,701,045	1,346,382	4,362,541	104,664	20,828

[별첨 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 기 - 기 스기	사업경력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김우진	대표이사	2014.12~ 현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선용	대표이사	2022.07~현재	대표이사			
	김정은	이사	2022.07~현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广 (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수천구(경)	
2024년 12월 31일	3	_	7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등록일자	출원번호/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Keep your jobst	가맹점의 영업표지 등	출원중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현재 출원 중으로 등록완료시까까지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케이잡스]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4년 12월 09일)

2. [케이잡스]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케이잡스(주)	케이잡스	김우진, 박선용	│ 가맷사업 미개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 길 11-49, 1층 2호

3. [케이잡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케이잡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의접스 	기타서비스	HR서비스 및 취업컨설팅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케이잡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2.12.31	•	2023.12.31.			2024.12.31.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1	0	1	1	0	1
서울	1	0	1	1	0	1	1	0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케이잡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_					
2023	_					
2024	_					

- 6. [케이잡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_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mark>광고 · 판촉 지출 내역</mark>

당사에서 [2024년]에 [케이잡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٨rl	는단 기간	지출 1	비용(단위:	비고	
十七	수단	기산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H 177
합계		연중	29,539	(비공개)		
	소계	연중	29,539	(비공개)		
□ □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소계					
판촉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고객센터	_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케이잡스(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화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없음	
보험계약자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보험기간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케이잡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천원, 부가세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4,100~35,750				
가맹비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33,0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당사의 귀책사 유가 있을 경우	소멸성 비용	
교육비	1,100~2,75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교육 전까지 계 약해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 1인 기준 금액. 자세한 내용은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개점행사비	-				

귀하는 가맹영업을 개시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때까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의 비용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4,100~45,750		
가입비	33,000		
교육비	1,100~2,750		
개점행사비	_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없음)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m²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9,500~ 89,500	3,975~ 4475			
간판	센터 임의 선정 업체	5,5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계약취소	
인테리어	센터 임의 선정 업체	44,000	2,2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필수



	설비 및 기타 소품	센터 임의 선정 업체	30,000~40,	기약에 기계약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귀하의 점포예정지가 당사에서 정한 기준평형(66㎡)에 미달할 경우에는 3.3m^2 당 창업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초과할 경우에는 3.3m^2 당 창업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도면, 디자인제공 및 감독 실시 대가로 간판 일금오십오만원 (₩550,000)(VAT포함), 인테리어는 평당 일금삼십삼만원(₩330,000)<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사업 운영 조건에 따라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종업원을 채용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케이잡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 에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		. 1 -1	.1 -1 -1 .2 .41.1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광고 시 분담액 결정	광고 1개월 전	광고 취소	광고 집행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V-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매출액의 11%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부가세포함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되지않음	교육필요 시 실비범위 내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협의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협력업체 (미지정)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IV.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중 참 조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 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센터상태 및 영업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 및 시공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출원신청 후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 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케이잡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양수가맹비와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가맹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영업 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이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 당 일금이십이만원 (₩220,000)(VAT포함)정을 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케이잡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 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상위50% 품목)

(단위 : 원)

人山	五百	고급	가격	구분
순번	품목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2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케이잡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	_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케이잡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	_	-	-	

2) 당사가 [케이잡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 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_	_	_	_	-	사업 미개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전직프로그램		1회 위반: 구두 경고	
외국인 고용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교육서비스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 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 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일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차 위반: 구두경고 - 2차 위반: 서면 시정 요구 - 3차 위반 : 물류공 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 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된 어조 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HR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케이잡스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센터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 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 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 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 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케이잡스]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케이잡스]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연 장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2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2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제35조 제3항 제3호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제35조 제3항 제3호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나목
○ [케이잡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제35조 제3항 제3호
않은 경우	제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제35조 제3항 제3호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어 레기 기 이	관련
계약 해지 사유	계약조문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제32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한 경우 (아래 참조)	제1항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한 즉시해지 사유 발생시 (아래	제32조
참조)	제2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에게 물품공급의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 2.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당사의 운영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여 당사가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 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귀하가 당사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의 물품 및 자재를 사용해서 영업하여, 당사가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4. 점포의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대금이 3개월간 10회 이상 연체 및 체납되어 당사가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 귀하가 임의적으로 당사와의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6.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3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 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 업자와 동일하게 소정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귀하가 운영하는 [케이잡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양수가맹비와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이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케이잡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HR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 종	해당 없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케이잡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일수	
09:00~18:00	주5일 기준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케이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 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	광고 성격	부 본사부담	담비율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수대로 1/N 광고비 50% 중 가맹점 수대로 1/N 없음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가 맹계약서 참조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개별 행사	센터 임	의로 시행 부담	: 센터 전액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상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해액을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일금오천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위약벌로 일금오천만(50,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할 경우 위약벌로 일금오백만(5,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 기간 중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 위반일수만큼 1일당 일금삼만원(\W30,000원)의 위약벌을 일금일천만원(\W10,000,000원)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4	
1 ' ' '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29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 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기그저귀	비용부담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	O인테라어 공사 비	는 이전을 수반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일로부터 3년
어 등의 노	용(장비·집기의	하지 않는 점포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이내에 가맹본
후화가 객관적	교체비용을 제	환경개선 : 2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의 책임없는
으로 인정되는	외한 실내건축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시유로 계약이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ㅇ점포의 확장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	종료(계약의
	알웨 벼용. 단,	는 이전을 수반	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해지 · 영업양도
0위생이나 안	가	하는 점포환경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	포함)되는 경우
전의 결함으	맹사업의 통일성과	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가맹본부
로 인하여 가	무관하게 가맹점		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부담액 중 잔여
맹업의 통일성	사업자가 추가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기간에 비례
을 유자하기 어	공시를 실시함에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하는 부담액은
렵거나 정상적	따라 소요되는 비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지급하지 아니
인 영업에 현	용은 제외)		본부 부담액을 지급	하거나 이미
저한 지장을			<분할지급 시 절차>	지급한 경우
주는 경우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에는 환수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가능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	
			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 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케이잡스]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해외인력사업 교육 ○ 국내 정부사업 교육	교육장	센터 개원 전	필수교육
정기 교육	리더쉽 교육, 센터 운영 관리 등	협의	계약기간 중	형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케이잡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14일	○ 해외인력 : 110만원 ○ 정부사업 : 165만원	1인당비용 기준/ 최소2인 교육필수
정기 교육	추후 공지	협의	일정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특별 교육	협의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피고용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 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케이잡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1층 2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676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399,321	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644-151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영재오.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년) AN O 된 AN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
⑥ 수령확인문구	수 령 하 였 음)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24.04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선 게 6 분기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24.04